##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231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권향엽·강준현·김 윤

박지원 · 서미화 · 이기헌

이병진 · 이성윤 · 이재관

최민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호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 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등을 이재민등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상북도에서만 주택이 3,600채 이상 전소된 상황으로, 상당수의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컨테이너형 이동식 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임시주거시설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이재민들의 열악한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등이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범위에 임시주거시설을 명시하고, 구호기관은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재민등에게 차질없이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조 등).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시주거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구호기관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
- ③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어렵 거나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 도록 사전에 확보하고, 확보한 시설 현황을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 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물품"을 "임시주거시설 및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물품"을 "임시주거시설 및 물품"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 "임시주거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주거
	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
	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구
	호기관이 일시적으로 제공하
	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u>5.</u> ~ <u>8.</u> (생 략)	<u>6.</u> ~ <u>9.</u> (현행 제5호부터 제8
	호까지와 같음)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u>재해로 주</u>	등) ① <u>다음</u>
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	
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 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 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6.(생 략)② (생 략)<신 설>

<신 설>


- 1. ~ 5. (현행과 같음)
- 6.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 항제1호에 따른 대피호 등 비 상대피시설
- 7. (현행 제6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 기 어렵거나 이재민등의 구호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 설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확보하고, 확 보한 시설 현황을 제5조제1항 에 따른 재해구호계획에 포함 하여야 한다.

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① 시·도지사등은 보관 등) ① -----지역별 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물품・장 -----임시주거시설 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및 물품-----확보하여야 하며, 구호에 필요 한 조직 • 인력을 확보하여 응 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 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지사등의 물품・장비 등 구호 ----임시주거시설 및 물품-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 · 인력 (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 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정 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 • 점검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